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26조 567억원으로, 당초보다 9,290억 2천 9백만원(3.7%)이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5,127,671	25,127,671	26,056,700	929,029	929,029	3.7%	3.7%
지방세수입	24,912,528	24,912,528	24,912,528	-	-	0.0%	0.0%
세외수입	213,848	213,848	213,848	-	-	0.0%	0.0%
보조금	1,295	1,295	1,295	-	-	0.0%	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	929,029	929,029	929,029	순증	순증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목별 증감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예산		추경예산	증감		비 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	929,029	929,029	929,029	
	순세계잉여금	-	-	929,029	929,029	929,029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	(87천원)	(87천원)	(87천원)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3조 2,902억 3천만원
으로 기정예산 3조 2,648억 4천만원 대비 253억 9천만원(0.8%)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264,839	3,264,839	3,290,235	25,395	25,395	0.8%	0.8%
행정·공관리	소 계	938,424	938,424	947,357	8,933	8,933	1.0%	1.0%
	행정운영경비	900,966	900,966	909,913	8,947	8,947	1.0%	1.0%
	재무활동	-	-	(196천원)	(196천원)	(196천원)	100.0%	100.0%
	사업비	37,458	37,458	37,444	△14	△14	0.0%	0.0%
교부금		2,326,415	2,326,415	2,342,877	16,462	16,462	0.7%	0.7%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별	2025예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당초	기정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264,839	3,264,839	3,290,235	25,395	0.8%
인력운영비(통합편성)	900,100	900,100	909,047	8,947	1.1%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2,071	22,071	21,821	△250	△1.1%
재정보전금	1,807,893	1,807,893	1,805,421	△2,472	△0.1%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8	178	168	△10	△5.6%
국고보조금 반환	-	-	(196천원)	(196천원)	100.0%
시세 징수교부금	516,092	516,092	535,026	18,934	3.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 지원	250	250	401	151	60.4%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10	110	89	△21	△18.8%
시세 세원발굴 지원	120	120	236	116	96.7%

Ⅱ . 검토의견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25조 1,276억 7천 1백만원) 대비 3.7%(9,290억 2천 9백만원) 증액된 26조 567억원 규모임.
- 세입과목별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순세계 잉여금’(9,290억 2천 9백만원)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8만 7천원)의 2개 세입 과목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목별 증감 〉

(단위:백만원)

구분 세목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계		25,127,671	25,127,671	26,056,700	929,029	929,02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	929,029	929,029	929,029
	순세계잉여금	-	-	929,029	929,029	929,029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	(87천원)	(87천원)	(87천원)

〈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C=B-A)	증(감액) 사유
		기정예산 (A)	추경예산 (안)(B)		
세입	총 계	-	929,029,041	929,029,04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929,029,041	929,029,041	
	순세계잉여금	-	929,028,954	929,028,954	○ 일반회계 결산전망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추경 편성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87	87	〈'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가. 순세계잉여금(순증)

- 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전년 (9,326억 7천 7백만원) 대비 △0.4%(36억 4천 8백만원) 감액된 9,290억 2천 9백만원 수준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목	설	정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 결산상 잉여금 =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집행액

※ 순세계 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이월액 - 국비반납금 or 초과세입 + 세출불용액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산출〉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가)	세출결산 집행액 (나)	결산상 잉여금 (다=가-나)	다음연도 이월액 (라)	보조금 실제 반납금 (마)	순세계 잉여금 (바=다-라-마)
2024	49조 1,050	49조 2,529	46조 7,815	2조 4,714	8,775	1,069	1조 4,870
일반회계	34조 5,026	34조 7,815	33조 5,654	1조 2,161	1,894	977	9,290
특별회계	14조 6,024	14조 4,714	13조 2,161	1조 2,553	6,881	92	5,580
2023	51조 4,900	50조 7,586	47조 4,605	3조 2,981	1조 5,347	1,174	1조 6,460
증 감	△2조 3,850	△1조 5,057	△6,790	△8,267	△6,572	△105	△1,59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428억원) 제외,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실수령액 대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최근 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편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금액	전년 대비 증가율(%)		
'25년 1회	9,290억원	△0.4	2,789억원	6,501억원
'24년 편성	9,327억원	△71.3	△3,092억원	1조 2,419억원
'23년 편성	3조 2,548억원	△44.6	2조 3,945억원	8,604억원
'22년 편성	5조 8,712억원	69.4	5조 3,401억원	5,311억원
'21년 편성	3조 4,653억원	50.4	2조 9,298억원	5,355억원

* 순세계 잉여금 산출 적용식 = 초과세입금 + 세출불용액

-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감소(△37억원)는, 서울시 주요 세입인 '지방세 수입' 세입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1조 2,419억원) 대비 크게 감소한 집행잔액(△5,918억원(△47.6%)) 발생 규모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원칙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시 전체).

* 지방세수입 결산: '23회계연도 23조 8,628억원 / '24회계연도 24조 8,037억원

- 과다한 초과세입이나 결손을 발생시켜 온 재무국의 지방세수입 운영의 경과로 볼 때 2024회계연도의 지방세수입 결산 실적(102.3%)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수추계 결과를 보이고 있는바, 보다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재무국의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10년 연도별 지방세수입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195,524	200,237	230,956	241,112	242,353
결산액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1	233,930	260,012	261,638	238,628	248,037
결산율	113.3	117.3	114.5	111.7	112.3	119.6	129.9	113.3	99.0	102.3
증감률	17.9	6.0	7.5	7.2	7.1	14.3	11.1	0.6	-8.8	3.9

- 한편, 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9,290억 2천 9백만원)은 법정 의무경비* (3,582억 9천 5백만원)와 통합안정화기금 조성(2,853억 6천 7백만원)에 우선 사용하게 되어, 이를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2,853억 6천 7백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자치구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 전출, 감채기금 적립 등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용처(가용재원 산출 과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당해연도분	2024년 결산(A)	실집행액 (B)	정산잔액 (A-B)	비고
순세계잉여금				929,029	
법정의무경비	10,220,492	10,499,179	10,140,884	358,295	※ 타 회계 전출 제외
교육청 전출금	3,825,676	3,933,450	3,785,507	147,943	
지방교육세	1,811,356	1,876,054	1,808,657	67,397	지방교육세×100%
담배소비세	257,277	249,166	252,749	△3,583	담배소비세×45%
보통세	1,757,043	1,808,230	1,724,101	84,129	보통세×10%
자치구 교부금	6,394,816	6,565,729	6,355,377	210,352	
조정교부금	4,171,745	4,284,300	4,172,937	111,363	

보통세분	4,149,571	4,264,479	4,149,571	114,908	보통세×226%
레저세분	22,174	18,655	22,174	△3,519	레저세×20%
지자세 특정시설분 (화력발전분)	1,192 (25년 본예산 반영)	1,166	1,192	△26	2024년 5~12월 화력발전지자세×62%
재정보전금	1,716,754	1,759,178	1,679,123	80,055	특별세분 재산세×100%
징수교부금	503,317	522,251	503,317	18,933	시세×3%(시 직접 징수액 제외)
타회계 전출금	2,193,120	2,171,229	2,195,369	△24,141	
도시개발	1,301,528	1,298,544	1,301,528	△2,984	재산세 도시지역분×70%
교통사업 (주차계정)	185,932	185,506	185,932	△426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주택사업 (재촉계정)	185,932	185,506	185,932	△426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주택사업 (도정계정)	185,932	185,506	185,932	△426	재산세 도시지역분×10%
소방	333,795	289,513	309,932	△19,879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5,367	(순세계잉여금-법정정산금)×50%
가용재원				285,367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3.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4.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사용하는 총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 초과세입금과 세출 집행잔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세입추계와 세출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으나,
- 건전재정의 원칙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만 7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목별 증감 〉

(단위:천원)

세목	구분	예산		추경예산	증감		비 고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	929,029,041	929,029,041	929,029,041	
순세계잉여금		-	-	929,028,954	929,028,954	929,028,954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	87	87	87	순증

-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 ‘국고보조금 반환금(예비비및기타-반환금기타)’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재무국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8만 7천원)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에 반영하여 국고에 반환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목	설	정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 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정확한 반납액의 예측이 곤란하여 정확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겠으나,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면밀히 산출하여 당초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반환)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3조 2,648억원) 대비 0.8%(253억 9천 5백만원) 증액한 3조 2,902억 3천 4백만원 규모임 (11개 사업).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

(단위:백만원)

구분		2025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264,839	3,264,839	3,290,235	25,395	25,395	0.8%	0.8%
행정안전부	소 계	938,424	938,424	947,357	8,933	8,933	1.0%	1.0%
	행정운영경비	900,966	900,966	909,913	8,947	8,947	1.0%	1.0%
	재무활동	-	-	(196천원)	(196천원)	(196천원)	순증	순증
	사업비	37,458	37,458	37,444	△14	△14	0.0%	0.0%
교부금		2,326,415	2,326,415	2,342,877	16,462	16,462	0.7%	0.7%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3,264,839	3,290,235	25,395	0.8%
행정안전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900,100	909,047	8,947	1.1%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2,071	21,821	△250	△1.1%
	재정보전금	1,807,893	1,805,421	△2,472	△0.1%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8	168	△10	△5.6%
	국고보조금 반환	-	(196천원)	(196천원)	순증
	시세 징수교부금	516,092	535,026	18,934	3.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 지원	250	401	151	60.4%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10	89	△21	△18.8%
	시세 세원발굴 지원	120	236	116	96.7%

〈 2025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C=B-A)	증(감)액 사유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B)		
세 출	총 계	3,246,657,636	3,272,052,796	25,395,160	
	〈 재 무 과 〉	812,722,830	821,669,512	8,946,682	
	보수	730,654,051	738,356,872	7,702,821	○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원 증가(+77명) 및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인원 증가(+1,691명)에 따른 보수(101-01) 증액 편성 ◦ 보수 (730,654백만원 → 738,357백만원)
	기타직보수	63,601,114	63,895,686	294,572	○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 수요 증가(+13명) 반영에 따른 기타직 보수(101-02) 증액 편성 ◦ 기타직보수 (63,601백만원 → 63,896백만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8,467,665	19,416,954	949,289	○ 공무직 4대 보험료 실집행액 증가분 반영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304-04) 증액 편성 ◦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8,468백만원 → 19,417백만원)
	〈 재 산 관 리 과 〉	22,070,989	21,820,989	△250,00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2,070,989	21,820,989	△250,000	○ 구 북부지점/지법 매입분납금 기준금리가 편성 당시 대비 하락(4%-3.35%)함에 따라 불용 예상 이자분 감액 ◦ 시설비 (22,061백만원 → 21,811백만원)
	〈 세 제 과 〉	1,808,071,010	1,805,589,667	△2,481,343	
	재정보전금	1,807,893,000	1,805,421,461	△2,471,539	○ '24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미지급분 800억 원 증액 편성 ○ '25.12월 불용 예상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825억 원 감액 편성 ◦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1,807,893백만원 → 1,805,421백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8,010	168,010	△10,000	○ 선정대리인 업무가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 편성 ◦ 사무관리비 (109백만원 → 9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	196	196	○ <'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C=B-A)	증(감)액 사유
		기정예산 (A)	추경예산(안) (B)		
					◦ 국고보조금반환금(0원→196천원)
	<세 무 과>	516,425,648	535,605,469	19,179,821	
	시세 징수교부금	516,092,370	535,025,828	18,933,458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위임징수 시세 초과 징수에 따른 증액 편성 ◦ 징수교부금 (516,092백만원 → 535,026백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 지원	250,260	401,377	151,117	◦ 납세조합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 기타보상금 (250백만원 → 401백만원)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10,151	89,397	△20,754	◦ 2025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계약 사업 기간 축소(12→9개월)에 따른 감액 편성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3백만원 → 62백만원)
	시세 세원 발굴 지원	120,000	236,000	116,000	◦ 민간인 탈세 제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 발생으로 증액 편성 ◦ 기타보상금 (0원 → 116백만원)

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 “인력운영비”는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9,001억원) 대비 1.1%(89억 4천 7백만원) 증액한 9,090억 4천 7백만원임.
- ▶ (보수)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원 증가분(+77명) 및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인원 증가분(+1,691명)을 반영하여 77억 원 증액 편성
- ▶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 채용 수요 증가분(+13명)을 반영하여 3억 원 증액 편성
- ▶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공무직 4대 보험료 실집행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9억 원 증액 편성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추가경정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산출내역
계	900,100	909,047	8,947	
보수 (101-01)	730,654	738,357	7,703	- 일반임기제 공무원 현원 증가(+77명) : 5,673,621,000원 증액 ※ 당초 편성인원 : 845명 → 현원 : 922명(25.4월) -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인원 추가(+1,691명) : 2,029,200,000원 증액
기타직보수 (101-02)	63,601	63,896	295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증가(+13명) : 294,572,000원 증액
공무직보수 (101-03)	87,377	87,377	-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304-04)	18,468	19,417	949	- 당초 예산편성 대비 공무직 4대 보험료 실집행 증가분 반영 : 949,289,000원 증액

- 다만, 재무국의 “인력운영비”는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 2023회계연도 151억 7천 1백만원, 2024회계연도 71억 3천만원

- 전년도(2024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편성(232억 5천 5백만원*) 하고도 과다한 집행잔액(71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음.
- * · ‘기타직보수’(136억 9천 4백만원) : 임기제 공무원 등의 현원 증가
·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 등’(95억 6천만원) : 공무원의 실제 퇴직 인원 증가 및 4대보험료 실집행액 증가
- 금년(2025년)의 경우에도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보수(89억 4천 7백만원)를 증액하는 등 매년 ‘보수’ 등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을 반복적으로 예산을 경정하고 있음.
- 이러한 예산의 운영은 당초부터 면밀하지 못한 수요 조사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수’ 예산의 운영을 위한 재무국의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

목 그룹	편 성 목	통 계 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보험료 부담금 등

※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기준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

나.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 본 건은 노원구(공릉동 662) 소재 구(舊) 북부지방검찰청 및 북부지방법원 청사 부지(13,209.7㎡)와 건물*(16,255.6㎡)을 SH공사로부터 매입한 대금(969억 7천 8백만원)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 서울생활사박물관 등 4개 공공시설로 활용 중

〈매입대금 분납 계획(2022~2026)〉

(단위 : 천원)

연도	계약금	2022년(1차)	2023년(2차)	2024년(3차)	2025년(4차)	2026년(5차)
분납액	6,600,000	10,000,000	23,647,555	22,504,679	21,429,746	
분납원금	6,600,000	9,930,916	20,184,829	20,087,567	20,087,567	20,087,567
이자		69,084	3,462,726	2,417,112	1,342,180	

- 4회차 분할납부(4/5회차)를 분납금(200억 8,757만원)에 대한 이자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당시 이자율(4%)의 하락(3.35%)에 따른 분납금 이자 산출 차액(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220억 7천 1백만원) 대비 1.1%(2억 5천만원) 감액한 218억 2천 1백만원 수준임.

〈매입대금 분납 계획(2022~2026), 이자 별도〉

(단위 : 백만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산출내역
계	22,071	21,821	△250	
사무관리비 (201-01)	10	10	-	
시설비 (401-01)	22,061	21,811	△250	- 구 북부지검/지법 매입 4차 분납금 지급당시 이자율(3.35%)이 편성이자율 (4%)보다 하락하여 분납금 이자분 잔액 250,000,000원 감액

- 다만, 금회를 포함한 이자 부담액이 73억원(4회/72억 9천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잔여 분납금과 이자의 일시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이자)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1조 8,078억 9천 3백만원) 대비 0.1%(24억 7천 2백만원*) 감액한 1조 8,054억 2천 1백만원 수준임.

* 2024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미지급분 800억 원 증액 편성

* 2025.12월 불용 예상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825억 원 감액 편성

〈재정보전금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기정예산	요구액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재정보전금	1,807,893	1,805,421	△2,472	◦ '24년 공동재산세 전출금 결산 결과 미지급분 800억 원 증액 편성 ◦ '25.12월 불용 예상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825억 원 감액 편성 ◦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1,807,893백만원 → 1,805,42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이전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 재정보전금(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 공동재산세전출금+면허세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제5조)에 근거¹⁾하여,

1)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공동재산세전출금’과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되는 법정* 경비(‘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임.

-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당해연도 월별 징수된 재산세 세입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동안 결산 결과에 따른 초과 세입이나 매년 12월에 부과·징수되는 세입은 회계연도 마감(출납폐쇄)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자치구로 교부하지 못하고,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전년 초과징수분과 함께 회계연도의 마감(12월분, 회계연도 출납폐쇄)으로 자치구에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된 세입을 포함하여 증액편성(800억원) 하고,
- 금년(2025회계연도) 전출금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12월 징수분 공동재산세 전출금(825억원)은 회계연도 종료를 이유로 감액하여 차기에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결국 당해연도에 실제로 세입처리된 재산세에 한하여 당해연도에 이를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결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년 12월분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세입을 당해연도 각 세입월 다음달에 교부

< 공동재산세전출금 결산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교부액	1,805,421	1,698,032	1,929,595	1,751,370	1,577,165

※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경비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교부액	28,400	28,900	29,240	29,480	30,260	30,780

<재정보전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5.5월 말	2024	2023	2022	2021
예산액(현액)	1,807,893,000*	1,767,463,483	1,790,745,652	1,959,074,763	1,781,630,523
집행액	14,200,000	1,726,832,284	1,727,271,761	1,959,074,763	1,781,630,523
집행률	0.8%	2.3%	96.5%	100%	100%

* 본 회기에 추경을 통해 기정 예산(1조 8,078억 9천 3백만원) 대비 0.1%(24억 7천 2백만원*) 감액 조정 예정

-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타 세목에 비해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도 비교적 용이하며, 비교적 정확한 추제도 가능한 세목이나,
- 이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매년 과다한 추가경정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금번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실제 당해연도에 징수된 세입을 기준으로 운영(전년 12월분부터 당해연도 11월세입)

〈재산세 예산 대비 결산 추이〉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수납률
2024	35,321	35,321	35,647	326	100.9
2023	35,221	35,221	34,749	-472	98.7
2022	38,276	38,276	39,189	913	102.4
2021	33,946	33,946	36,461	2,516	107.4
2020	29,990	29,990	32,040	2,050	106.8

※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공동재산세 물건 중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재정보전금 균등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 간의 재산세 세입 규모 차이가 최대 5.5배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공동재산세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보완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3회계연도 결산, 강남 4,468억원, 강북 819억원

< 재정보전금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 (결산액 기준)

2021년도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5.9배(강남 7,555억, 강북 292억)에서 5.3배 (강남 4,473억, 강북 841억)로 완화
2022년도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6.3배(강남 8,354억, 강북 318억)에서 5.4배 (강남 4,938억, 강북 920억)로 완화
2023년도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5.9배(강남 7,591억, 강북 294억)에서 5.5배 (강남 4,468억, 강북 819억)로 완화
2024년도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7.2배(강남 7,736억, 강북 284억)에서 5.5배 (강남 4,547억, 강북 821억)로 완화
2025년도 (예산액 기준)	○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5.9배(강남 8,042억, 강북 311억)에서 5.5배 (강남 4,733억, 강북 867억)로 완화

< 2024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격차완화 효과, 강북구 기준 >

- 2024년 결산액 기준, 강북구 기준 -

(단위 : 억원/배)

구 분	2024년 당 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 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 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33,950	16,975	16,975	33,950	0	-	-
종로구	1,118	559	679	1,238	120	3.9	1.5
중 구	1,730	865	679	1,544	△186	6.1	1.9
용산구	1,698	849	679	1,528	△170	6.0	1.9
성동구	1,112	556	679	1,235	123	3.9	1.5
광진구	726	363	679	1,042	316	2.6	1.3
동대문	632	316	679	995	363	2.2	1.2
중랑구	384	192	679	871	487	1.4	1.1
성북구	618	309	679	988	370	2.2	1.2
강북구	284	142	679	821	537	1.0	1.0
도봉구	286	143	679	822	536	1.0	1.0
노원구	556	278	679	957	401	2.0	1.2

은평구	552	276	679	955	403	1.9	1.2
서대문	570	285	679	964	394	2.0	1.2
마포구	1,382	691	679	1,370	△12	4.9	1.7
양천구	946	473	679	1,152	206	3.3	1.4
강서구	1,094	547	679	1,226	132	3.9	1.5
구로구	630	315	679	994	364	2.2	1.2
금천구	434	217	679	896	462	1.5	1.1
영등포	1,644	822	679	1,501	△143	5.8	1.8
동작구	786	393	679	1,072	286	2.8	1.3
관악구	572	286	679	965	393	2.0	1.2
서초구	4,270	2,135	679	2,814	△1,456	15.0	3.4
강남구	7,736	3,868	679	4,547	△3,189	27.2	5.5
송파구	3,112	1,556	679	2,235	△877	11.0	2.7
강동구	1,078	539	679	1,218	140	3.8	1.5

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본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1억 7천 8백만원) 대비 5.6%(1천만원) 감액한 1억 6천 8백만원 수준임.
 - 감액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²⁾(2025.1.1.)에 따라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법인의 범위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

재무국에서 운영하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련한 사무가 법무담당관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되어 관련 업무가 법무담당관으로 이관 (2025.2.14.)*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예산(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임.

*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 이관 계획(재무국 세제과-2439, 2025.2.12.)

〈법무담당관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범위 확대〉

종전 납세자보호관 업무(지방세기본법시행령§51조의2)	'25. 1. 1. 개 정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현행과 같음) 5. (추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 선정대리인 업무 개요 〉

- (개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지원 제도(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10조)
- (지원대상)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
- (선정대리인 현황) 총 20명 (임기 2년: 2024. 3. 2. ~ 2026. 3. 1.)
변호사 5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11명 ※ 2024.3.2.일 위촉, 시 일괄 관리
- (선정대리인 수당) 의견서 작성 건당 15만원, 의견 진술 건당 10만원
* '25년 예산액: 1천만원 (의견서 작성 50건×150,000원, 의견 진술 25건×100,000원)

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소유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마. 국고보조금 반환(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

- 본 건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반납해야 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9만 6천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증감 내역 〉

(단위: 천원)

세부사업별	2025예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당초	기정		증감액	증감률
국고보조금 반환	-	-	196	196	100.0%

- 「지방재정법」(제34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전망하여 당초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 예산에는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

- 재무국은 2024회계연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19만 6천원)를 반납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목	설	정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현 금으로 처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재무국 국고보조금 세출 편성〉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국고보조금 반환	-	196	196	국고보조금 잔액 87,600원 / 반환이자 107,850원

- 다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경우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회계연도 종료→사업정산→세입예산 편성)은 있겠으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에 대하여 기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초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바. 시세 징수교부금

- 본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경비로,

-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 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시세징수교부금은 교부대상 세목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 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지방세 초과세입(3조 2,720억 5천 2백만원) 중 본 징수교부금 교부 대상 세목(7개)에 해당하는 초과세입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5,160억 9천 2백만원) 대비 3.7% (189억 3천 4백만원) 증액된 5,350억 2천 6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징수교부금 예산 증감 내역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별	2025예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당초	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246,657	3,246,657	3,272,052	25,395	0.8%
시세 징수교부금	516,092	516,092	535,026	18,934	3.7%

-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 (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의 징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징수교부금 교부액 규모는 이미 연 5천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율(3%)는 과거 수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징세 비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고도화된 전산화로 인하여 감소한 징세
비용을 감안한 적정 교부율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요구
된다고 하겠음.

〈 시세 징수교부금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5월 말
예산액 (현액)	510,458,159	640,196,050	581,888,081	503,317,200	516,092,370
집행액	510,458,159	640,196,050	569,001,006	503,317,200	242,358,889
집행률	100%	100%	97.8%	100%	47.0%

〈시세 징수교부금 자치구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	510,458	100.0	640,196	100.0	569,001	100.0	503,317	100.2	242,269	100.0
종로	19,160	3.8	23,796	3.7	22,601	4.0	18,518	3.7	9,950	4.1
중구	28,123	5.5	35,881	5.6	35,847	6.3	29,531	5.9	15,043	6.2
용산	19,779	3.9	24,341	3.8	21,227	3.7	18,432	3.7	7,542	3.1
성동	17,520	3.4	21,538	3.4	18,722	3.3	17,161	3.4	7,796	3.2
광진	12,053	2.4	16,205	2.5	13,758	2.4	12,216	2.4	6,044	2.5
동대문	12,183	2.4	15,468	2.4	16,182	2.8	13,463	2.7	6,088	2.5
종랑	11,224	2.2	14,232	2.2	12,531	2.2	11,103	2.2	4,579	1.9
성북	13,899	2.7	17,335	2.7	14,726	2.6	13,398	2.7	5,590	2.3
강북	8,023	1.6	10,236	1.6	8,793	1.5	7,803	1.6	3,525	1.5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도봉	9,119	1.8	11,287	1.8	9,865	1.7	8,384	1.7	3,367	1.4
노원	13,973	2.7	17,356	2.7	15,006	2.6	12,848	2.6	5,516	2.3
은평	13,647	2.7	16,939	2.6	14,710	2.6	12,740	2.5	5,176	2.1
서대문	11,032	2.2	13,891	2.2	12,387	2.2	10,982	2.2	4,531	1.9
마포	20,918	4.1	26,694	4.2	23,116	4.1	20,372	4.0	9,830	4.1
양천	15,743	3.1	19,028	3.0	16,346	2.9	14,653	2.9	5,841	2.4
강서	25,466	5.0	31,082	4.9	26,998	4.7	24,358	4.8	13,498	5.6
구로	17,510	3.4	21,779	3.4	18,828	3.3	15,930	3.2	7,345	3.0
금천	13,759	2.7	16,917	2.6	15,171	2.7	13,836	2.7	6,813	2.8
영등포	33,931	6.6	41,526	6.5	38,639	6.8	33,747	6.7	18,752	7.7
동작	13,900	2.7	16,623	2.6	13,750	2.4	12,865	2.6	5,200	2.1
관악	12,902	2.5	16,011	2.5	14,554	2.6	12,441	2.5	4,983	2.1
서초	42,300	8.3	52,698	8.2	46,192	8.1	42,177	8.4	20,291	8.4
강남	68,284	13.4	92,390	14.4	81,106	14.3	72,058	14.3	35,722	14.7
송파	37,426	7.3	45,428	7.1	38,762	6.8	35,210	7.0	15,900	6.6
강동	18,584	3.6	21,515	3.4	19,184	3.4	19,091	3.8	13,347	5.5

※구청별 실제 집행한 내역임(귀속년도 결산 정산분 익년 반영).

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 지원

- 본 사업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서울시에 납입한 세액에 대하여 징수교부금 형태의 법정교부금(납입세액의 2%)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지급 기준 : 징수세액의 5%('18년) → 2%('19년~ 현재), 자치구를 통하여 4월, 7월, 10월, 12월에 지급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2억 5천만원) 대비 60.4%(1억 5천 1백만원) 증액된 4억 1백만원 수준임.

「지방세법」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 및 제151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

- 증액 사유는 납세조합 근로자 수의 증가* 등으로 2025년 1분기 납세조합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증 22억원)함에 따라, 2025년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당초예산(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60.4%, 1억 5천 1백만원) 하려는 것임.

* 2024년 12월 대비 2025년 5월 기준 조합원수 증가(7,471명 → 10,493명 / 40.4% 증가)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증감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총 계	3,264,839	3,290,235	25,395	0.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조합 지원	250	401	151	60.4%

○ 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경과를 살펴보면, 재무국은 총 14개의 납세 조합을 통해 1만 493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178억원 수준의 개인 지방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억 5천 7백만원*을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바,

* 추경예산액 4억 1백만원 중 전년도 귀속분 지급액 4천 4백만원을 제외한 2025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교부금

- 스스로 해당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 하고 있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소재 납세조합 현황 〉

(2025. 5월 현재)

연번	자치구	조합명	지정 연도	조합원 수	주 소	업종	비고
계	9개 구	14개 조합		10,493			
1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납세조합	1993	368	세종로 32	미국 대사관	외국기관
2		주한일본대사관 납세조합	1978	78	중학동 18-11 일본대사관	일본 대사관	외국기관
3		세양을근 납세조합	2002	34	새문안로5가길 28 (적선동) 1907호	선원취업 중개	외국기업
4		한국해외취업선원 납세조합	1975	542	세종대로 23길 54 세종빌딩 10층	선원취업 중개	외국기업
5	중구	중부시장 해산물 납세조합	1977	172	오장동 44-12 중부빌딩 403	수산물 판매업	해산물
6	용산구	글로벌을근 납세조합	2006	1,752	한강대로 92	대사관, 경비업 등	외국기업
7		남산을근 납세조합	1983	1,198	원효로1가 41, 용산더프라임 19층	3M, 대사 관 등	외국기업
8	성북구	강남 납세조합	2002	22	성북동 31-57	경비업 등	외국기업

9	마포구	한국을근 납세조합	1978	747	상암동 1660 월드컵파크 710-401	아마존 구글 등	외국기업
10	양천구	오렌지납세조합	2013	177	목동서로 201 KT정보통신센터 20층	아마존 구 글 등	외국기업
11	영등포구	서울지구 납세조합	1977	915	여의도동 10-2	IT, 대사관 (영국, 캐나 다 등)	외국기업
12		아시아 납세조합	2023	3,988	국제금융로10 One IFC B/D 5층	쿠팡 등 물류업	외국기업
13	동작구	노량진농수산물 납세조합	1976	257	노들로 674	수산물 판매업	수산물
14	강남구	일산납세조합	2017	243	테헤란로77길 23	소프트웨어 개발	외국기업

※ 2024년 12월 대비 2025년 5월 기준 조합원 수 증가(7,471명 → 10,493명)

〈 최근 5년 납세조합 지원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 고
2024년	253	253	0	100	집행부족액: △44
2023년	248	193	54	77	
2022년	395	372	22	94	
2021년	172	172	0	100	집행부족액: △126
2020년	219	198	21	90.4	

※ 근로자 수 증가 등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으로 '21년 및 '24년 집행부족액 발생하였으며 해당 미정산액은 각각 '22년 및 '25년 2월에 정산 완료함.

아.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세입시스템)와 행정안전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및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분담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다만, 해당 사업의 위탁계약 지연 체결로 사업기간이 단축(12개월 → 9개월)됨에 따라 당초 분담금*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1억 1천만원) 대비 18.8%(2천 1백만원) 감액된 8천 9백만원 수준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증감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총 계	3,264,839	3,290,235	25,395	0.8%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10	89	△21	△18.8%

- 다만, 종전의 서울시 시스템의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으로의 통합은 결국 보류되어, 본 사업 등을 통해 각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바,
- 당초 시스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분담금’ 등에 대한 정산(환수) 등 필요 절차 이행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음.

자. 시세 세원 발굴 지원

- 본 사업은 민간인의 탈세 제보 등 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민간인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구분되며,
- 지정 예산(1억 2천만원) 대비 96.7%(1억 1천 6백만원) 증액된 2억 3천 6백만원 수준임(‘기타보상금’ 순증).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증감 내역 〉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별	2025예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기정		증감액	증감률
총 계	3,264,839	3,290,235	25,395	0.8%
시세 세원발굴 지원	120	236	116	96.7%

- 재무국은 ‘기타보상금(민간인 대상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금번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기타보상금’ 1억 1천 6백만원)의 원인이 되는 시민의 제보에 따른 지방세 세입 증대 효과는 75억 9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연간 시민 제보에 의한 세원발굴 실적은 1,262억원 규모(최근 3년 평균)이며, 이에 대한 포상금(기타보상금 포함) 지급 규모는 1억원(최근 3년 평균) 규모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편성 예산 대비 집행 실적 〉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편성액	집행액*
포상금(303-01)	100,000	99,983	100,000	99,934	84,447	84,235
기타보상금(301-14)	-	-	-	-	15,553	15,552

* 집행액 합계 99,787천원

- 이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포상금 지급 방식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조례 규정은 아닌지 재무국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한편, 세입의 확대와 시민의 성실한 납세 풍토의 확대를 위하여, 국세 보상 비율을 감안한 ‘포상금’(‘기타보상금’ 포함) 지급 규모의 상향 등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탈루세액 징수 포상금 관련 국세/지방세 제도 비교 〉

○ 지방세 지급 기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탈루세액 등	지급률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100분의 15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500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5,50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국세 지급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2천5백만 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2천5백만 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